

2025년 AI바우처 지원사업 공모안내서(AI반도체분과)

2025. 2. 12.







목 차

T LINIO	2
I . 사업개요 ····································	• 3
1. 추진배경	• 4
2. 추진체계	• 5
3. 추진일정	. 8
II. 사업내용 ····································	. 9
1. 지원내용	10
2. 자격요건	13
Ⅲ. 신청방법 ····································	18
1. 과제신청	19
2. 문의처	22
IV. 과제선정 ····································	23
1. 선정절차	24
2. 선정기준	26
V. 유의사항	27
1. 신청요건	28
2. 의무사항	30
3. 제재사항	34

- ◇ 본 내용은 AI바우처(AI반도체분과)의 공모안내서이며, '25년 AI 바우처는 [일반/AI반도체/소상공인/글로벌] 분과로 운영됩니다.
- ◇ 본 내용은 K-클라우드 프로젝트 內 AI바우처(AI반도체트랙)의 공모안내서와 동일합니다.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 AI 기술이 필요한 수요처를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구매・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를 지원함으로써 AI기업 육성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전환속도가 느린 국내 중소기업 등의 혁신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
 -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활용·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AI바우처 지원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수요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점산업 지정·지원

□ 추진경위

- 인공지능 국가전략(관계부처 합동, '19.12)의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데이터 활용지원 과제 일환으로 AI바우처 2020년 신규 도입
- 현 정부 국정과제(77-1.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AI바우처 지속 추진
-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22.6월, AI반도체 초기 시장 수요 창출 및 실증) 및 대한민국 디지털전략('22.9월, 국산 AI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3년도 AI바우처 사업에 AI반도체 트랙 신설

□ 관련 법령 및 규정

-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784호)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법률 제20261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및 부속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제191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2023-226호),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제2023-250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제258호),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제190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제2021-161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26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20호)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0057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34호)
- ㅇ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 추진체계

- □ (사업목적) AI 솔루션 적용이 필요한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AI 솔루션을 원하는 AI 솔루션 기업 (이하 '공급기업**')으로부터 구매・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촉진
 - * 수요기업 :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 중소·중견기업 (분야 무관) 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동물병원, 지역소재 보건소
 - ** 공급기업 : 자사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AI 기업(법인)

<'25년 AI바우처 지원사업 주요 공모 계획(안)>

분과	지원규모	지원대상		
포피	(130개 내외 과제)	수요기업	공급기업	
일반	60개 내외 과제	AI반도체분과와 동일	자사 Al솔루션을 보유한	
AI반도체	20개 내외 과제	국내 중소·중견기업 의료법상 의료기관 수의사법상 동물병원 지역소재 보건소	국내 AI 기업(법인) *과제 신청 시 공개된 공급기업 Pool 등록 완료 必	
소상공인	20개 내외 과제	국내 소상공인	(등록방법은 [붙임4]	
글로벌	30개 내외 과제	해외 수요처	확인)	

- * 수요기업은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1개과제만 과제 신정 가능하며, 초과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 자동 탈락, `20~`24년까지 AI바우처 旣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5년 신청 불가
 - ※ 단, 의료기관은 동일 의료기관이라도 旣 지원받지 않은 진료과/센터는 신청 가능하며, 동일 의료기관 內 1개 진료과/센터만 신청 가능
- * 공급기업은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2개까지 과제 신청 가능하며, 분과별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이 가능(*1개분과內 2개과제 신청 불가)
 - ※ 단, '24년도 결과평가 '미흡' 이하 과제 공급기업의 경우 통합 최대 1개까지 과제 신청 가능
 - ※ 공급기업이 허용된 최대 지원 과제수 초과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부터 자동 탈락
 - ※ 분과 내 지원 과제수 초과 신청 과제를 우선 탈락시키며, 이후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지원 과제수 초과 신청에 대해 접수순 후순위 탈락 진행
 - <예1> 일반분과 2개, AI반도체 1개 신청 : 일반분과 2개 중 접수순 후순위 1개 우선 탈락 → 일반 1개, AI반도체 1개 신청 인정
 - <예2> 일반분과 1개, AI반도체 2개, 글로벌 1개 신청 : AI반도체 분과 2개 과제 중 접수순 후 순위 1개 우선 탈락 → 일반/AI반도체/글로벌분과 3개 과제중 접수 후순위 과제 1개 탈락
 - * 본 공모안내서는 【AI반도체】분과만 해당하며, 그 외 분과의 세부사항은 해당분과의 공모안내서 확인 必



-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2.3억원 한도
 - 사업비 구성 : [기본] AI바우처 사업비(최대 2억원) +
 - [추가]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최대 3천만원)
 - ※ 과제는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AI반도체 컨소시엄]으로 신청(수요기업, 공급기업 또는 AI반도체 컨소시엄 단독으로 과제 신청 불가)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 (감액)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 □ (사업기간) '25. 5. 1. ~ 11. 30.(7개월)
- □ (지원방식)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형태의 AI솔루션을 수요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일반분과와 AI반도체분과의 주요 차이점]

구분	일반 분과	AI반도체 분과	비고
공모기간	′25. 2. 12.~′25. 3. 13.	′25. 2. 12. ~ 3. 24.	접수마감일 다름
과제기간	'25. 5. 1.~11. 30.(7개월간)	′25. 5. 1.~11. 30.(7개월간)	동일
지원금액	최대 2억원	최대 2.3억원	A반도체 인프라 구축비 최대 3천만원 추가
컨소시엄 구성	수요기업+공급기업	[수요기업+공급기업] + [AI반도체 컨소시엄]	AI반도체 컨소시엄: AI반도체社+클라우드 社
민간매칭	수요(현물+현금), 공급(현물)	수요(현물+현금), 공급(현물)	동일
가점	클라우드+청년기업+지역기업	청년기업+지역소재기업	클라우드 가점 없음
공급기업 과제신청 개수	분과별 최대 1개, 4개분과 통합 최대 2개 (2024년 결과평가 미흡 판정 기업은 분과 통합 최대 1개)	분과별 최대 1개, 4개분과 통합 최대 2개 (2024년 결과평가 미흡 판정 기업은 분과 통합 최대 1개)	동일
수요기업 신청자격	旣 선정기업('20~'24) 신청 불가	旣 선정기업('20~'24) 신청 불가	동일
과제 산업분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동일
Al솔루션 (공급기업)	국산AI반도체 기반 AI솔루션 개발.공급 의무 없음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버와 호환 가능한 AI솔루션 개발.공급	과제기간 중 '호환확인서' 제출 必
AI서비스 (수요기업)	국산AI반도체 기반 AI서비스 의무 없음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AI서비스 의무 (과제종료 후 최소 6개월간)	클라우드사가 제공하는 국산 AI반도체 서버임차 크레딧 사용 의무



<지원방식 및 추진체계>

순서	대상	내용
1	수요기업(주관기관) ➡ AI바우처 운영기관	AI바우처 신청
2	AI바우처 운영기관 ➡ 수요기업(주관기관)	AI바우처 지급
3	수요기업(주관기관) ➡ 공급기업(참여기관)	AI바우처를 활용하여 AI솔루션 구매
4	AI반도체 컨소시엄 ➡ AI바우처 컨소시엄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5)	공급기업(참여기관) ➡ 수요기업(주관기관)	Al솔루션을 수요기업에 판매
6	공급기업(참여기관) ➡ AI바우처 운영기관	Al솔루션 판매비용 청구
7	AI바우처 운영기관 ➡ 공급기업(참여기관)	Al솔루션 판매대금 지급



- (수요기업) 제공된 공급기업 Pool* 내에서 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공급기업을 찾아 컨소시엄 구성 후 AI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신청
 - * 공급기업 Pool은 NIPA 홈페이지(nipa.kr) 및 Al Hub(aihub.or.kr)를 통해 공지
- (공급기업) 과제 신청 시 반드시 공개된 공급기업 Pool[붙임5]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공급기업 Pool 미등록 기업은 2025년 과제참여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기한 내 [붙임4]에 따라 신청(신규 등록기업) 또는 변경(기존 등록기업)을 완료하여야 함(必)
- o (매칭지원) 수요기업이 수요·공급 매칭 신청서(별첨3)를 제출한 경우 맞춤형 매칭지원 실시
- * 단, 매칭지원 소요기간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4.02.21(금) 15:00까지** 메일(aivoucher@kait.or.kr)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급기업은 매칭지원 없음)
- □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전담/운영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3 추진일정

구분	내용	비고
사업공고	 공고일자 : 2025. 2. 12.(수) K-클라우드 프로젝트 內 AI바우처(AI반도체트랙) 동시 공고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공급기업 Pool 모집 (신규&변경)	 신청기간 : 공고일 ~ '25. 2. 21.(금) 15:00까지 신청 마감일까지 미신청 기업 및 기한내 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 등록불가 기업은 2025년 과제 신청 불가 최종 등록여부는 심사를 통해 2025.2.26.(수)까지 개별 통보 예정 공급기업 등록정보는 NIPA 홈페이지 및 AI HUB를 통해 공개 	이메일 제출 (ai-voucher@nipa.kr) ※ 신청방법 [붙임4] 확인
사업설명회	• '25년 AI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5. 2. 20.(목) 14:00 / 코엑스(아셈볼룸홀) * 참석대상: 수요기업, 공급기업, AI반도체기업, 클라우드기업 등 * 사전등록 불필요, 현장등록 가능, 주차지원 불가 * 사정에 의해 행사장 좌석 및 배포자료가 조기 소진 될 수 있음	NIPA 홈페이지 [공지사항]
<u></u>		
수요·공급 기업 매칭	 수요 ⇔ 공급기업 간 매칭(자율) * 수요기업이 매칭 신청 희망 시 KAIT에 2025.02.21.(금) 15:00까지 매칭신청서(별첨3)를 메일로 신청 (공급기업은 매칭신청 불가) 	이메일 제출 (aivoucher@kait.or.kr)
<u> </u>		
사업계획서 및 서류접수	• 과제 접수마감 : 2025. 3. 24.(월) 15:00까지 - 전산접수 개시일 : 2025. 3. 04.(화)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및 각종 제출서류	전산접수
<u> </u>		
선정평가	 적합성검토(3월4주), 서류평가(4월1주), 서류평가 합격과제 발표(4월2주, NIPA홈페이지), 발표평가(4월3주) 예정 서류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하며, 접수 현황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 가능 발표평가 일정은 대상 기업에게 별도 통보 예정 	평가위원회
<u></u>		1
최종선정	 사업비 심의 및 중복성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과제 발표(4월말 예정, NIPA 홈페이지) 협약체결(5월초) 협약기간(`25.5.1 ~ 11.30) 	NIPA 및 AI바우처 운영기관
↓		
수행관리 및 이행점검 ↓	• 과제 진도관리 및 예산 점검(5월~11월)	NIPA 및 AI바우처 운영기관
결과평가	. 겨고비그셔 저스 미 치조 펴기/11위 12위	평가위원회
글쒸당기	• 결과보고서 접수 및 최종 평가(11월~12월)	증기귀전외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사업내용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항목 및 준수사항

- (지원항목) 과제 당 최대 2.3억원* 내에서 지원되며 AI솔루션비,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 등 사업비 인정항목만 집행·정산 가능
 - * 2.3억원 구성 : (최대 2억원) = Al솔루션비 + 선택항목(인건비 등) (최대 3천만원) = Al반도체 인프라 구축비
 - ** 클라우드 기반 추론 서비스가 가능한 서버형(클라우드사 데이터센터 內 서버 구축) AI반도체만 지원 가능하며, 엣지(Edge)형 및 수요·공급기업의 현장에 서버를 구축하는 On-Premise형은 지원 불가

[사업비 지원항목]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 인정항목 외 모든 항목 불인정
	o 데이터 수집·구매·정제·가공 등 데이터 관련 일체 비용
[필수신청 항목]	o 소프트웨어 구매·임차비 일체
① AI솔루션비 (AI솔루션 납품비)	o Al 기술 전문가 자문비
②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최대 3천만원) o AI반도체 구매, 기술지원비, 서버구축, 클라우드 환경 구축 등	o Al솔루션 및 Al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하드웨어 구매비, 재료비 o Al솔루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웹화면개발, 모바일 서비스 개발비
[선택신청 항목] 필요한 경우만 신청 ① 인건비(Al 모델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등) ② 용역비 ○ Al솔루션 테스트 인증비 ○ Al반도체 적용/호환 컨설팅비(최대 3천만원)	o 임차비(장소/장비), 회의비, 출장비 o 기술교육을 포함한 제반 교육·훈련비 o 법률·회계 서비스 비용 o 광고판매활동 관련 제비용 o 시장조사 등 연구활동비 o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취득관련 비용 o Al 기술 전문가 자문을 제외한 일체 자문비 o 엑셀을 포함한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o 세금납부 및 사업기간 외 집행금액

- ※ 인건비는 수요기업 현물출자이거나 공급기업의 AI 모델 구축 등을 위한 인건비로서 급여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로 비용 청구 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을 청구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현황 일괄 제출)
- ※ 주관/참여기관은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을 100%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 정부과제 동시 수행시 참여인력의 참여율이 100%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 '용역비'는 사업계획서 내 용역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전담기관 승인 후 집행할 수 있음(필요시 심의를 통해 집행여부 결정할 수 있음)
- ※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는 국산 AI반도체 구매, 서버구축, 클라우드 환경 구축 및 기술지원비 등 AI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비용만 집행 가능
- (사업비 구성 준수사항) 필수 신청항목 중 AI 솔루션비는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최대 3천만원)를 제외한 정부지원금(최대 2억원)의 60% 이상 편성하여야 함 ※ (예시) 정부지원금 2억 신청 시 AI 솔루션비는 1억2천만원 이상 편성 필수
-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는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AI반도체 기업 (60% 이상)과 클라우드 기업(40% 이내)이 자율 편성하여야 함
- 선택 항목별 구성 및 금액은 자유롭게 편성 가능 (단, 용역비 중 'AI반도체 적용 컨설팅비'는 최대 3천만원 이내로 제한)
- 최종 선정 과제의 경우 사업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출연금 총액 및 항목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데이터 관련비용 편성불가) AI바우처 지원사업은 AI솔루션 도입 (수요)/납품(공급) 지원이 주요 목적이므로 과제별 사업비 편성시 "데이터 관련 일체의 비용(수집·구매·정제·가공비 등) 편성 불가"
 - ① 인건비 : 인건비 책정 인력은 데이터 관련 일체의 업무 불인정 ※ 인건비 활용 내역 증빙자료 제출시 데이터 관련 업무내역 불인정 * 수요 및 공급기업의 현물/현금 인건비 모두 데이터 관련 비용 불인정
 - ② AI솔루션비: 협약체결 후 제출하는 계약서/견적서 상의 구성항목, 증빙자료 등에 데이터 관련 일체의 비용 불인정(해당비용 환수조치)
 - ③ 기타 : 데이터 관련 일체의 비용(수집/구매/정제/가공비 등) 편성불가

<AI바우처 사업의 데이터 관련비용 처리 방안>

구분	데이터 관련비용 처리방안
데이터 수집	ο 수요기업 → 공급기업 무상제공 원칙(사업비로 수집비용 처리 불가)
데이터 구매	ο 필요시 수요 또는 공급기업의 자체비용으로 구매(사업비로 구매 불가)
데이터	o 인건비(현물/현금)를 편성하지 않은 참여인력이 정제/가공 가능
정제/가공 등	o 외부 용역시 수요 또는 공급기업의 자체비용으로 처리(사업비로 용역 불가)



□ 민간부담금

-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민간부담금을 필수로 매칭** 해야 함 * 단, 수요기업이 보건소인 경우에 한하여 민간부담금을 제외
 - 총사업비(100%)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수요+공급)
 - 민간부담금 = 수요기업(현금+현물) + 공급기업(현물)
 -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현물과 현금을 모두 매칭해야 하며, 공급기업은 현물만 매칭

< 사업비 산정구조 (※ 사업비 계산 [별첨2] 참조) >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율>			
구분	중소기업/의료기관/동물병원	중견기업	대기업
	(청년기업인 경우)	(청년기업인 경우)	(청년기업인 경우)
수요기업	20% 이상 (10% 이상)	30% 이상 (10% 이상)	
공급기업	20% 이상	30% 이상	30%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수요기업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기준 수요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수요기업 민간부담금 중 현금면제(현물로만 매칭 가능) 대상

1) 청년기업 : 수요기업 대표자(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청년기업으로 인정

2) 비영리기관 :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현금면제(현물만으로 매칭 가능)

(*희망시 현금매칭도 가능)

3) 지역소재 기업/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 등록증 상 본점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지역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인 기업

- * 기업에 따라 현물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는 민간부담금 일부 또는 전체를 현금 부담 가능
- (부가세 부담)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외 공급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를 별도 부담해야 하므로 부가세 납부 후 환급시까지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과제에 지원해야 함
 - * 비영리기관 등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로는 세금 비용집행이 불가하니 과제 선정 후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계획 사전 점검 필요
- ㅇ 동 사업은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2 자격요건

□ 수요기업 자격요건

- o (지원대상)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충족되는 경우 지원가능
 - * 해외기업(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해외기업의 국내지사 및 해외 지분이 50%이상의 기업은 과제 신청 불가
 - ① 국내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접수마감일까지 법인 설립시 인정) ※ 법인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②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상 의원·병원·요양병원, 종합병원을 의미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제출 필수)
 - ③ 수의사법 상 동물병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은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제출
 - ※ 단,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제출이 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 참여 허용
 - ④ 지역소재 보건소
 - ※ 보건소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을 제외한 지역소재 보건소만 신청 가능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제출 필수)
- AI바우처 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AI바우처 지원사업에 과거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요기업으로 사업참여 불가
 - ※ 의료기관은 수요기관 선정이력에 동일한 의료기관, 동일 진료과/센터의 경우는 사업 참여 불가(동일한 의료기관이나 선정이력 없는 진료과/센터는 가능)
- 과제 종료 후 최소 6개월간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여 과제 내용에 해당하는 AI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 o `20~`24년 AI바우처 사업수행 중 중도포기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은 `25년 AI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불가
 - ※ 단, 100% 공급기업의 문제로 인하여 중도포기 된 수요기업은 참여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이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1.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2. 최근 결산기준('24)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 1) 창업·법인설립 3년차 미만(접수마감일 기준)*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2) 대표이사(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3)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 5. 최근 3년간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 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공급기업 자격요건

- **공개된 공급기업 Pool[붙임5]**에 등록된 자체 AI 솔루션 보유 국내 기업(법인에 한함, 접수마감일까지 법인 설립시 인정)
 - ※ 해외기업(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해외기업의 국내지사 및 해외 지분이 50%이상의 기업은 과제 신청 불가
 - 미등록된 공급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을 위해 [붙임4]에 따라 신규 등록 또는 변경신청(기존등록기업)을 진행해야 함
- 자사의 AI솔루션은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버와 호환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업이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버 환경에서 AI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공급(납품)하여야 함
- 공급기업은 분과별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이 가능하며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2개까지만 과제 신청 가능
 - 단, '24년 결과평가 '미흡' 이하 과제의 공급기업은 전체 분과 통합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



- 결과평가 시 "매우미흡" 또는 "미흡" 기업 중 제재심의 결과 사업참여 제재가 확정된 경우 제재기간 동안 공급기업으로 사업참여 불가
- o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이 해당하는 경우. **공급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1.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2. 최근 결산기준('24)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 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 1)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접수마감일 기준)*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2) 대표이사(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3)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 5. 최근 3년간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 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 AI반도체 컨소시엄 자격요건

- (AI반도체 기업) 국산 AI반도체를 보유(개발·공급)한 기업(법인에 한함)
 - (역할) AI반도체 납품 및 공급기업이 AI반도체를 활용한 AI솔루션을 수요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 ※ 보유한 AI반도체는 클라우드 기업의 서버에 탑재 및 구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급기업의 AI솔루션과 호환 가능하여야 함
 - ※ AI반도체 기업은 ①과제별 필요한 사양·수량에 맞는 AI반도체 납품 ②공급 기업의 AI솔루션과 AI반도체 간 호환성 확보 ③안정적인 AI솔루션 개발 환경을 위한 기술지원 등
- o (클라우드 기업)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기반으로 추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법인에 한함)



- (역할)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및 크레딧을 수요· 공급기업에 제공
 - ※ 과제기간중에는 베어메탈* 서버 방식도 가능하나, 과제 종료후에는 클라우드 서버 방식으로 제공 가능하여야 함(* 베어메탈 서버 :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하는 물리 서버)
 - ※ 클라우드 기업은「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클라우드 사업자에 한함
 - ※ 클라우드 기업은 ①과제별 필요한 서버를 자사 데이터센터 내 구축하고 ②AI반도체를 구매하여 자사 서버에 설치 ③과제기간 동안 수요 및 공급기업에 AI반도체 서버(베어메탈 또는 클라우드 방식) 제공 ④과제종료 후수요기업에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버 6개월간('25.12.1.~ '26.5.31.) 이용 크레딧 제공
- ㅇ (제외대상) 제출서류 미비 또는 신청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제외
 - 아래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과제 신청이 제한되며, AI반도체기업과 클라우드기업 중 1개 기업이라도 제외 대상인 경우 컨소시엄 등록 신청 불가

[AI반도체 컨소시엄 신청 제한]

- 1. 접수 마감일('25.3.24.) 현재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3. 최근 결산기준('24)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 Pool 등록 신청일 기준 창업·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 회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예외
- 4.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로 확인)
-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6. 최초 신청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경우



ㅇ 2025년 국산 AI반도체 기술지원 가능 AI 알고리즘

구분	AI 알고리즘
시각 지능	ConvNeXt Series, ConvTasNet, DeepLabV3 Series,DeiT Series, DenseNet, Series, DPT-large, FCN_ResNet Series, GoogLeNet, Inception_V3, MC3_18, MNASNet Series, MobileNet_Series, R(2+1)D_18, R3D_18, RetinaFace, RegNet Series, ResNeXt Series, S3D, SAM2.1_hiera_large, UNet, VGG Series, ViT-large, YOLO Series
언어·음성 지능	Audio-Spectogram-Transformer, BART Series, BGE-M3, BGE-Reranker Series, DistilBERT-base, E5-base-4K, EEVE-Korean-10.8b, EfficientNet Series, EXAONE-3.0 Series, Gemma Series, GPT2 Series, KoBART-base, Llama2 Series, Mi:dm Series, Mistral Series, Phi-2, Qwen Series, RoBERTa, Salamandra-7b, SecureBERT, SOLAR-10.7b, T5 Series, Wav2Vec2, Whisper Series, Wide_ResNet Series
생성 지능	BLIP2-2.7b, Llava-v1.6-mistral-7b, SDXL-turbo, Stable Diffusion Series
분석 지능	EfficientNet Series, MotionBERT, Time-Series-Transformer
행동 지능	-
기타	ShuffleNet_V2 Series, SqueezeNet1 Series

※ AI 알고리즘 별 세부 지원규격은 반드시 AI반도체사에 문의 요망

※ 상기 AI 알고리즘 기준 제품(기업명 : 가나다순)

- 리벨리온: ATOM+, 퓨리오사AI: Warboy





신청방법



1 과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대상) II.2.(수요·공급기업)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수요기업(주관 기관)과 공급기업(참여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신청
- 반드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의하여 등록/공개된 AI반도체 컨소시엄 Pool에서 희망하는 "AI반도체 컨소시엄"을 선택하여 과제 신청
 - ※ AI반도체 컨소시엄 풀(Pool) 미등록 기업은 '25년 사업 참여 불가
 - ※ 해외 기업(본사가 해외인 기업) 및 해외 기업의 국내 지사는 과제 신청 불가
- o 과거 AI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은 2025년 수요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급기업은 선정이력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생년월일)을 통해 동일기업 식별하여 제외
- 단, 의료기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동일 진료과/센터의 경우 제외
- o 수요기업은 AI바우처 지원사업 전체 4개 분과 통합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의료기관은 동일 의료기관라도 旣 지원 이력이 없는 진료과/센터는 신청 가능
 - 의료기관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동일 의료기관이 2개 이상 과제 신청 불가
- 초과 신청 시 접수 후순위 과제는 자동탈락
- o **공급기업은**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2개까지 과제 신청 가능하며, 분과별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 가능
- 단, '24년도 결과평가 '미흡' 이하 과제 공급기업의 경우 4개 분과 통합 최대 1개까지 신청 가능
- 초과 신청 시 접수 후순위 과제는 자동탈락
- '매우미흡' 과제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기업 Pool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과제 신청 시 적합성 검토에서 자동탈락
- (신청기간) 2025.03.04.(화)[전산접수 개시일] ~ 2025.03.24.(월) 15:00까지
- o (신청분과) AI반도체 분과 (※다른 분과에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o (신청방법) NIPA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하단 NIPA 관련 웹사이트 > NIPA사업관리 시스템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NIPA사업시스템 교체에 따라 전산접수 신청 URL, 신청 방법등은 전산접수 개시일(2025.3.4.)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제출서류

				서 류	
	구분	작성양식	수요 기업	공급 기업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1호	0	X	수요기업이 제출
2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	별첨1 (엑셀파일)	0	0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내용까지 취합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고유양식에 따름	0	0	수요/공급 각각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고유양식에 따름	0	0	대표자 주민번호 앞 6자리만 표가(그외 비공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고유양식에 따름	0	0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접수마감일 포함
6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년 ('22~'23년) *선정과제는 협약 전 '24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24년 재무제표 확인 결과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상장 진행예정 기업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제출	고유양식에 따름	0	0	'24.1.1 이후 설립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제외 *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7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벤처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고유양식에 따름	0	0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접수마감일 포함
8	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2호	0	0	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9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서식3호	0	0	수요/공급 각각 제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호	0	0	수요/공급 각각 제출
11	최근 3년간 정부과제 수행이력 확인서	서식5호	0	0	수요/공급 각각 제출
12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서식6호	0	0	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고유양식에 따름			동물병원
13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고유양식에 따름	0	X	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고유양식에 따름			지역보건소 (서울·경기·인천 제외)
14	솔 루션에 대한 의료 인허가증 또는 인허가 관련 서류 *Al솔루션 관련 인허가증	고유양식에 따름	Х	0	해당 공급기업만 제출 (식약처 인허가 관련 자료)

- o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단, "[별첨1]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는 엑셀파일로 제출) (원본대조필 불필요)
- o 제출서류 파일명: "구분번호.구분명_기업명(수요)_기업명(공급)" *(예시)1.사업계획 서_수요기업명_공급기업명
- o 제출서류는 먼저 각 기업별 폴더에 첨부 후 각 기업 폴더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예시) [공급기업_남산플랫폼]폴더, [수요기업_한강시스템] 폴더]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자료_한강시스템]로 제출
- ※ 공급기업 제출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수요기업이 과제 신청 시 일괄 제출**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Pool 등록 시 旣 제출한 서류도 AI바우처 지원과제 신청 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NIPA가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 ※ 위의 첨부 서류는 과제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 o 과제신청은 수요기업이 공개된 공급기업 Pool 내의 공급기업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동일기업인 경우 접수불가(적합성 검토 탈락)
 - ※ 과제 신청 시 AI솔루션은 공개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AI솔루션으로만 신청 가능
- AI반도체 분과 과제 신청 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의하여 반드시 등록/공개된 Pool에서 "AI반도체 컨소시엄"을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여야 함 (※ AI반도체 컨소시엄을 선택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적합성 탈락)
- o 전산접수 오류방지 및 테스트를 위해 접수마감 2일전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작성 및 업로드 하며 계속 "저장" 및 "제출"을 클릭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시 주의사항

- o 과제접수는 수요기업이 하여야 하며, 과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총괄책임자의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
-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 완료 불가**
- *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o 마감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저장" 버튼 클릭후 바로 "제출" 버튼도 클릭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
- "제출" 버튼을 클릭해도 마감시간까지는 계속 수정제출 가능
- o 마감시간까지 "제출"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과제는 "저장"을 하였어도 접수 불가
- *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시스템에 접수가 완료되 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전산접수 마감시한 : 2025. 03. 24.(월), 15:00까지
- o 발표를 위한 PPT 및 PDF 등의 파일은 과제신청 시 제출 불필요
 - ※ 발표자료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수요기업이 제출하며, 서류 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 대상에게 별도 통보함



2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처

- ㅇ 대표전화 : 043-931-5760 (*이메일 문의처 : aivoucher@kait.or.kr)
- o AI반도체분과 문의처 : 02-580-0747
- *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시스템관련 문의처

o NIPA사업시스템 교체에 따라 추후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IV

과제선정



선정절차

□ 선정절차

o 제출서류 적합성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과제 선정 후. 사업비 심의 · 조정(사업비검토위원회), 중복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선정 절차 >

1 적합성검토

(2)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사업비 심의·조정 서류평가 ▶ 발표평가

(3) (사업비검토위원회)

(4) 중복 심의 (중복검토위원회)

① (적합성 검토) 기본요건(신청자격, 제출서류,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적합성 검토 탈락기준

- 공급기업 Pool(붙임5) 미등록 공급기업과 매칭하여 과제 신청하는 경우
- 수요기업(주관)과 공급기업(참여)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신청하는 경우
- AI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제한중인 수요 및 공급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 과거 AI바우처 지원받은 수요기업(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센터)이 '25년 AI바우처 수요기 업으로 재신청 하는 경우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허용된 최대 지원 과제수 초과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 과제탈락 (분과 우선적용)
- 동일한 기업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으로 중복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 과제탈락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참여제한으로 등록된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등 본 공모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공모안내서 자격요건 중 사업에 참여할수 없는 내용에 부합되는 경우
 - ※ 지원과제수 초과, 중복신청 등 적합성 검토는 AI바우처 지원사업 全분과 통합 고려하여 진행

②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ㅇ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



- ※ 서류평가로 2배수 내외 선정 후 발표평가 진행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서류 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만 진행될 수 있음
- o (발표평가)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심의대상 과제 선정
 - ※ (예시) 총 30분 발표의 경우 발표(15분 내외), 질의응답(15분 내외)으로 운영
- ③ (사업비 심의) 사업비검토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결과(순위) 및 지원가능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 ④ (중복성 심의) AI바우처 신청 과제 중 타기관의 AI관련(글로벌분과의 경우 해외진출 관련) 지원사업과 유사·중복검토위원회를 통해 중복 과제 여부 심의



2 선정기준

- o (평가위원회 구성) 인공지능 전문가, 각 분야별 기술·비즈니스 전문가 등 7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 o (선정방법)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발표평가 차순위를 지원함 (단, 발표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선정평가 항목 및 세부내용 >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과제목표의 타당성 (20)	○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 ○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필요성 및 도입으로 인한 혁신성 ○ 최종목표, 성과목표, 성능지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국산 AI반도체 적용 및 활용 구체성 (30)	○ (AI반도체기업) AI반도체 납품일정 및 호환/기술지원 계획의 구체성 ○ (클라우드기업)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적정성 ○ (공급기업) 국산 AI반도체 기반 AI솔루션 적용/호환 최적화 방안 ○ (수요기업)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활용 AI서비스 계획		
서류 · 발표 평가	추진체계 및 조직역량- 과제 수행 역량(도입환경, 데이터 보유 현황, 참여인력 구성 등)(수요기업) (20)- 사업 수행의지의 적극성 및 구체성- 향후 AI 솔루션 도입 제품·서비스 활용계획의 구체성			
(100)	추진체계 및 조직역량 (공급기업) (20)	○ 공급기업의 과제 수행역량 - 과제에 적용할 AI 솔루션의 우수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구성 적정성 - 수요기업 적용 AI 솔루션의 지속 활용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		
	사업 효과성 (10)	○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비용절감 등 혁신 효과 ○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매출증가, 투자유치, 수출 등) ○ Al솔루션 도입을 통한 기업 성장가능성, 사회적 가치창출 등 사업 기대효과의 우수성		
가점	청년기업 (최대 1점)	○ 청년기업(대표자 중 1인 접수마감일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에 대해서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각 0.5점씩 컨소시엄 기준 최대 1점 부여		
항목	지역소재기업 (최대 2점)	○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과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지역소재(서울/경기 /인천 제외)인 기업의 경우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각 1점씩 컨소시엄 기준 최대 2점 부여		
감점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최대 1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이 있는 수요 및 공급 기업에 각 0.5점씩 컨소시엄 기준 최대 1점 감점 부여		

※ 가/감점 적용 후 동점자 발생시 순위 확정 기준

- 1) 국산 AI반도체 적용 및 활용 구체성 점수(30점)가 높은 순
- 2) 추진체계 및 조직역량(수요기업) 점수(총20점)가 높은 순
- 3) 추진체계 및 추진역량(공급기업) 점수(총20점)가 높은 순 4) 과제목표의 타당성 점수(20점)가 높은 순 (* 위의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가점·감점사항)** 서류 및 발표평가 시 모두 적용



V

유의사항

1 신청요건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미흡 또는 누락, 기재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며, 신청내용은 최종 제출 후 과제 선정 시까지 워칙적으로 수정 불가
- 특히, 중요 공지사항은 주관(수요) 및 참여(공급)기관의 총괄(공동) 책임자 이메일로만 개별 통지되므로, 총괄책임자 이메일의 ①메일 주소 오타 ②용량부족 ③스팸처리 ④메일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 ※ 전산접수시스템, 사업계획서(한글), 총괄현황표(엑셀) 모두 총괄책임자 이메일주소 최종 확인 요망
- o AI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신청 시 공급기업은 반드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Pool에 등록한 AI 솔루션으로만 과제 신청 가능
- o 수요기업이 보건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지역소재 보건소만 신청 가능
- 다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중복 신청 불가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결과는 개별통보되지 않으며, NIPA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과제 신청 접수 번호'로 확인해야 함
- o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방법(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기준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ㅇ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ㅇ 법규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해 제재가 결정된 경우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특수관계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접수마감일 기준)인 경우



- ㅇ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 에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o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旣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 ㅇ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타 주의사항

- AI반도체분과는 수요·공급기업이 협의하여 반드시 AI반도체 컨소 시엄을 지정하여 과제를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선정평가 시 공급기업의 솔루션 제공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공급기업 솔루션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직전년도 결과평가 1개 과제 이상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공급 기업은 선정평가 시 해당 내용이 평가위원에게 공개됨
- 사업비검토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재사항 결정에 대한 이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
 ※ (심의위원회 제척) 인공지능 전문가, 각 분야별 기술·비즈니스 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제재 대상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친족 관계
 - 인 사람, 제재 대상 기업에 소속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포함 불가



2 의무사항

□ 사업일반

- o 공급기업은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 현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며, 이렇게 개설된 계좌에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선금 지급 신청 전까지 납입하여야 함
- 공급기업이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수요-공급기업 간 계약서*, AI솔루션 견적서, 견적 증빙, 라이선스 정책 등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수요-공급기업간 매출, 유지보수,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민간 자율 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전담기관은 개별사안에 대해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
- AI솔루션비 및 인건비의 구성항목, 견적서, 견적 증빙자료 內 데이터 관련 일체의 비용(수집・구매・정제・가공비 등) 편성 불가
- o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함
- o 과제에 참여하는 수요 및 공급기업은 AI솔루션 라이선스 교육, AI 솔루션 테스트 교육, 부정수급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NIP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과제진척현황, 비용집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하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자료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자체 시험 결과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한 테스트 결과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 단, 제출 테스트 결과서에는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KOLAS 인증 기업의 테
 - 스트결과서만 허용
 - ** 기한 내 미제출 시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o 수요기업은 과제 종료 시 납품받은 공급기업 솔루션에 대한 검수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 o AI반도체 분과의 AI반도체는 클라우드 기반 추론서비스가 가능한 서버형(클라우드사 데이터센터 內 서버 구축) AI반도체만 지원이 가능 하며, 엣지(Edge)형 및 수요・공급기업 현장에 서버를 구축하는 On-Premise형은 지원이 불가함
- o 공급기업은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3천만원)를 클라우드기업에 지급 하여야 하며, 클라우드기업은 AI반도체 구매 및 기술지원비 등을 AI 반도체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함
- o AI반도체 컨소시엄의 클라우드 기업은 반드시 컨소시엄 내 AI반도체 기업으로부터 AI반도체를 구매하여야 함
- o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로 구매한 AI반도체의 소유권은 클라우드 기업에게 있음
- o AI반도체 컨소시엄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AI반도체 기업) AI반도체 납품 및 공급기업이 AI반도체를 활용한 AI솔루션을 수요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 * AI반도체 기업은 ①과제별 필요한 사양·수량에 맞는 AI반도체 납품 ②공급기업의 AI 솔루션과 AI반도체 간 호환성 확보 ③안정적인 AI솔루션 개발환경을 위한 기술 지원 등
 - (클라우드 기업)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및 크레딧을 수요·공급기업에 제공
 - * 클라우드 기업은 ①과제별 필요한 서버를 자사 데이터 센터 내에 구축 ②AI 반도체를 구매하여 자사 서버에 설치 ③과제기간 동안 수요 및 공급기업에 AI반도체 서버(베어메탈 또는 클라우드 방식) 제공 ④과제종료 후 수요기업에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버의 6개월간('25.12.1.~'26.05.31.) 이용 크레딧 제공
- 과제를 수행하는 수요 및 공급기업은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매출, 수출, 특허,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등 성과 및 만족도 조사에 응해야하며, 미이행 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보도, 홍보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함



□ 정부기관의 지원과제에 대한 정보 관리를 자료 제공

-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플랫폼) 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담기관에 작성・제출한 사업 수행계획서, 수행 결과보고서 등 일체의 자료 및 데이터, 데이터 활용사례(이하 포괄하여 '데이터 산출물')는 정부 정책에 자료의 통합관리 및 정부서비스 운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이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처리됨(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플랫폼」 서비스에 연계 예정)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 중견기업의 과제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됨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사업계획서 內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 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서식 6호)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 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時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o 선정기업(수요,공급)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時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 * 단, 사정에 의해 협약 時 미제출한 경우 협약기간 內에는 필수 이수해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時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o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o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內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時 사업결과서 內 데이터 전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함
- o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時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 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3

제재사항

□ 부정수급 관련 제재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ㅇ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비용 또는 고액 청구

- ㅇ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민간부담금을 대납해주어 수요기업 유치
- ㅇ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바우처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
- o AI반도체 컨소시엄 중 1개 이상 기업이 수요기업의 민간부담금을 대납해주어 수요기업 유치
- OAI반도체 컨소시엄 중 1개 이상 기업이 수요기업에게 바우처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
- ㅇ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바우처 비용으로 중복 청구
- o 바우처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개발 비용을 청구한 경우
- ㅇ바우처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
- ㅇ기타 바우처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비 환수 외에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클린 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 어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
-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o AI바우처 사업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접수는 국번없이 043-931-5760번 또는 이메일(ai-voucher@nipa.kr) 상시 신고 접수



□ 사업수행 관련 제재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규정을 준용함
-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전액환수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과제중단,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o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매우미흡" 공급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기업 Pool에서 제외될 수 있음